

(2011. 04. 20)

# 定 款

학교  
법인 동명문화학원

#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1977.04.11 제정	1996.02.28 개정	2003.09.17 개정
1977.09.21 개정	1996.09.21 개정	2004.02.21 개정
1979.01.15 개정	1997.01.11 개정	2004.05.20 개정
1981.04.16 개정	1997.10.31 개정	2004.12.30 개정
1981.12.16 개정	1998.03.01 개정	2005.04.21 개정
1982.04.08 개정	1998.05.01 개정	2006.02.23 개정
1983.08.12 개정	1998.10.21 개정	2006.04.24 개정
1983.10.19 개정	1999.03.17 개정	2007.05.14 개정
1985.01.16 개정	1999.08.20 개정	2007.10.19 개정
1985.11.16 개정	2000.02.25 개정	2008.01.01 개정
1986.06.28 개정	2000.08.07 개정	2008.02.18 개정
1988.02.26 개정	2000.09.27 개정	2008.11.26 개정
1988.08.29 개정	2001.01.27 개정	2009.02.24 개정
1990.04.03 개정	2001.03.28 개정	2009.11.11 개정
1992.07.24 개정	2001.12.11 개정	2010.03.01 개정
1993.04.07 개정	2002.02.23 개정	2010.12.09 개정
1993.12.18 개정	2002.06.04 개정	2011.03.01 개정
1994.03.05 개정	2003.03.11 개정	2011.04.18 개정
1995.12.22 개정	2003.04.02 개정	2011.04.20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 이념에 입각하여 보통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설치 학교) 이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개정 2008.11.26)

1.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 (개정 2011.03.01)
2. 동명대학교

제 4 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535 번지에 둔다.

제 5 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6)

## 제 2 장 자산과 회계

### 제 1 절 자산

제 6 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 2 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7 조(재산의 관리) ① 제 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조(경비와 유지 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 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 2 절 회계

제 9 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 1 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 10 조(예산 외의 채무 부담) 수지 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 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 12 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 월 1 일부터 익년 2 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2 조의 2(예결산 보고 및 공시)

- ① 이 법인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에 의한 공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 제 3 절(삭제)

제 13 조 (삭제 2007.5.14)

제 14 조 (삭제 2007.5.14)

제 15 조 (삭제 2007.5.14)

제 16 조 (삭제 2007.5.14)

제 17 조 (삭제 2007.5.14)

## 제 3 장 기 관

### 제 1 절 임 원

제 18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0 인 (이사장 1 인을 포함한다) (개정 2008.1.1) (개정 2009.2.24)
  2. 감사 2 인
- ② 학교의 장은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1호의 이사 중 3인은 개방이사로 한다. (개정 2008.1.1) (개정 2009.2.24)

제 19 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 년
  2. 감사 2년, 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 ③ 이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선임된 이사는 학교의 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이사로 재임한다.

제 20 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중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 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 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 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20 조의 2(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는 임기만료 3개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 ③ (삭제 2007.10.19)

제 20 조의 3(개방이사의 자격)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2. 「사립학교법」 제22조의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개정 2008.11.26)

제 20조 의 4 (삭제 2007.10.19)

제 20 조의 5(개방이사 추천위원회) ① 개방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동명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3.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1인

③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개방이사추천 위원회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21 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 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 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 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정수의 3 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 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 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삭제 2008.11.26)

⑥ 감사 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다만,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 22 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제 23 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24 조(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퀼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 ① 항 및 제 ②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5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26 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6 조의 2(상근 임원) 법인의 임원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 임원으로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2 절 이 사 회

제 27 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1.26)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다만, 대학교 교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04.20)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8 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1.26)

제 29 조(이사회의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 되는 사항

제 30 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30조의2(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31 조(이사회의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6)

1. 재적 이사 반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5 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4 장 수익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개정 2009.11.11)

제 32 조(수익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1. 부동산 임대업
2. 체육, 문화 시설 사업
3. 평생교육사업
4. 주차장업
5. 영상 산업
6. 용역업
7. 기타 각 호에 관련되는 부대 사업

제 32 조의 2(수익 사업의 명칭) 제 32 조의 사업을 위하여 동명빌딩, 기타 부동산의 임대와 동명체육센타 등을 직접 경영한다.

제 32 조의 3(수익 사업체의 주소) 이 법인의 수익 사업체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1. 동명빌딩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533-1 외
2. 동명체육센타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525-11
3. 평생교육사업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525-11 외
4. 주차장업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525-11 외
5. 영상 산업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525-11 외
6. 용역업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525-11 외

제 32 조의 4(사회복지사업) 법인은 그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1.11)

제 33 조(관리인) ① 제 32 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제 5 장 해 산

제 34 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26)

제 35 조(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08.11.26)

제 36 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8.11.26)

## 제 6 장 교 직 원

### 제 1 절 교 원

#### 제 1 관 임 명

제 37 조(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개정 2008.11.26)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대학교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면한다. 다만, 조교의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며, 근무 기간은 1 년으로 하고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1.04.20)

##### 1. 근무 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 6 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다. 조교수 : 4 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라. 전임강사 : 2 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3. 근무 조건 : 교수 시간 및 소속 학부(계열,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 실적·논문 지도·진로 상담 및 학생 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 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본부의 쳐·실장 및 학(부)장 등의 보직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이 보한다.  
(개정 2011.04.20)
- ④ 제 1 항 내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삭제

제 37 조의 2(고등학교교원의 공개전형) 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교원의 공개전형을 시행한 경우 교원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6)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1.26)

제 38 조(기간제 교원) ①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거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② 기간제 교원은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③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임면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 39 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 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졸업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08.11.26)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개정 2008.11.26)

제 40 조(휴직 기간) 교원의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 39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 39 조 제 2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 39 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 39 조 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 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 39 조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고용 기간으로 한다.
6. 제 39 조 제 7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인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7. 제 39 조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 39 조 제 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 39 조 제 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 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 39조 제 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 41 조(휴직 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 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 39 조 제 3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 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 42 조(휴직 교원의 처우) ① 제 39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8 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 한다.

② 제 39 조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 39 조 제 2 호 내지 제 4 호와 제 6 호 내지 제 11 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서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43 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 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 1 항 또는 제 2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 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 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 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 2 항 제 1 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 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임면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 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 2 항 제 1 호와 제 2 호 또는 제 1 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 2 항 제 2 호 또는 제 1 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 44 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45 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제 45 조의 2(명예퇴직 수당) ①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45 조의 3(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45조의 4(정년) ① 대학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그 이외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총장의 정년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1.11)  
②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 제 3 관 교 원 인 사 위 원 회

제 46 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47 조(인사위원회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교육 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임면하고자 할 때에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교원 상별에 관한 사항(개정 2011.04.20)

2.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교원의 보직 및 교원의 연수 대상자, 포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삭제

4.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 37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 동의 제청을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 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 48 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에서 10인의 교원으로 구성되며, 대학교의 교학지원처장과 고등학교의 교감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1.4.20)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49 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의 경우에는 교학지원처장이 된다. (개정 2011.4.20)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0 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1 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 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 한다.

제 52 조(인사위원회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 53 조(운영 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 54 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하고 다음 각 호의 징계위원회를 둔다.

1. 고등학교교원징계위원회

2. 대학교원징계위원회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학교 교원 또는 학교 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삭제

제 55 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개정 2008.11.26)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6 조(징계 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7 조(제척 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 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57 조의 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 57 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

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 위원의 3 분의 2 에 미달되어 징계 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 위원 수의 3 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57 조(징계 의결 요구 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58 조(진상 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 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 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59 조(징계 의결) ① 징계 의결은 재적 위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면권자가 제 2 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면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하고 징계 처분권자는 징계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60 조(징계 의결시 정상 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 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60 조의 2(징계 사유의 시효) 교원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 61 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 62 조(운영 세칙) 교원징계위원회가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 3 절 (삭 제)

제 63 조 (삭제 97.10.31)

제 64 조 (삭제 97.10.31)

제 65 조 (삭제 97.10.31)

제 66 조 (삭제 97.10.31)

제 67 조 (삭제 97.10.31)

제 68 조 (삭제 97.10.31)

제 69 조 (삭제 97.10.31)

제 70 조 (삭제 97.10.31)

제 71 조 (삭제 97.10.31)

제 72 조 (삭제 97.10.31)

제 73 조 (삭제 97.10.31)

제 74 조 (삭제 97.10.31)

제 75 조 (삭제 97.10.31)

제 76 조 (삭제 97.10.31)

## 제 4 절 사무직원

제 77 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일반 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③ 재직 중인 일반 직원이 제 1 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 78 조(임용) ① 일반 직원의 신규 임용, 승진, 승급, 대우직원 선발,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 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일반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 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 79 조(복무) 일반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80 조(보수) 일반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 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 81 조(신분 보장) 일반 직원의 신분 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 한다.

제 81 조의 2(정년) 일반 직원의 정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82 조(징계 및 재심 청구) 일반 직원의 징계 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재심 청구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를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 제 7 장 직 제

### 제 1 절 법인

제 83 조(법인 사무 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국에는 총무과, 관재과, 기획과 및 감사실을 두며 각 과(실)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 2 절 대 학 교

제 84 조(총장 등) ① 동명대학교(이하 “대학교” 라 한다)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으로 겸보하거나 교원이외의 자로 보할 수 있다. 부총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03.01)  
(개정 2010.12.09)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제84조의2(직속기구) ① 총장직속기구로 기획전략처, 정보전산센터, 비서실을 두며, 부총장 직속기구로 산학협력실을 둔다. (개정 2011.04.18)  
② 기획전략처장, 산학협력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

로 보하고 정보전산센터장, 비서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각 부서의 부장 및 과(팀)장은 5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04.18)

③ 각 처, 실 및 센터에는 필요한 부, 과(팀)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04.20)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4.18)

제 85 조(대학원장·대학장·학부장) ① 대학교의 각 대학원에는 대학원장을, 각 단과대학에는 대학장을, 각 학부에는 학부장을 둔다.

② 대학원장, 대학장, 학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 단과대학 또는 학부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③ 대학원에는 교학과를 두며 과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86 조(하부 조직) ① 대학교에는 교학지원처, 학생지원처, 입학홍보처, 총무처, 대외협력처를 둔다. (개정 2011.04.18)

② 각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부처장,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혹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각 부서의 부장 및 과(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04.18)

③ 각 처 및 단과대학에는 필요한 실, 센터, 부, 과(팀)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04.18)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87 조(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에는 장을 두며 각 기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

④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에는 필요한 실, 과(팀) 등을 둘 수 있으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과(팀)장은 5급 이상 직원으로 보하며,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별률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의 설립, 운영, 해산 등은 관련법과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 87 조의 2(기타기관)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기타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부 조직 및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88 조 (삭제 08.2.18)

### 제 3 절 (삭제)

제 89 조 (삭제 06.02.23)

제 90 조 (삭제 06.02.23)

제 91 조 (삭제 06.02.23)

제 92 조 (삭제 06.02.23)

### 제 4 절 고등학교

제 93 조(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 인과 교감 1 인 또는 2 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94 조(하부 조직)

① 고등학교 교무 조직에 부를 두며 부장은 교사로 겸보한다.

②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부참사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 부서의 업무분장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 95 조(학교운영위원회) ①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학교운영위원회는 동법 제32조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제21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한다.

② 법인 이사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그 설치 취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지도한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건학 이념 구현에 저해되는 운영을 하거나 과행적으로 운영되어 교육 활동 및 학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와의 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장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2 배수로 추천한 교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제 96 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①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분쟁 사안을 심의·조정·권고하기 위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제 5 절 정 원

- 제 97 조(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 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직급별 정원은 직원인사규칙에 별도로 정한다.

## 제 6 절 대학평의원회

- 제 97 조의 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거 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 97 조의 3(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26)

1. 교원 5인 (개정 2008.11.26)
2. 직원 3인 (개정 2008.11.26)
3. 학생 2인 (개정 2008.11.26)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개정 2008.11.26)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97 조의 4(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제 97 조의 5(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7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 97 조의 6(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5호의 경우는 자문에 한한다.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97 조의 7(평의원의 위촉 및 운영규정) 평의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 제 8 장 보 칙

제 98 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부산일보에 공고한다.

제 99 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100 조(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설립 협약 : 1977. 4. 11. 문교부장관)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소
이사장	강석진	1910. 3.21	4	동구 좌천동 668의 2
이사	강기수	1924.12.15	4	남구 대연동 1731의 1
이사	강정남	1940.12. 3	4	동구 좌천동 668의 2
이사	강석엽	1923. 2. 4	2	동래구 온천동 1213의 13
이사	왕상은	1920. 3.31	2	중구 대청동 4가 80
이사	김오수	1933. 7.20	4	남구 대연동 897의 5
이사	박영수	1925. 5.15	2	남구 남천동 70의 7
이사	강석진	1917.10. 1	2	진구 부전동 272의 1
이사	홍순대	1934. 9.17	4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 2가 303의 15
감사	현상태	1920. 6. 6	1	진구 부전동 418의 1
감사	강시봉	1934.11.21	2	진구 양정동 104의 22

## 부 칙

(1977. 9. 21. 교육감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제 43 조 제 ②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 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된다.
- ③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사무 조직에 근무하는 사무 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④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 2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1979. 1. 15.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이 정관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1981. 5. 16.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81. 12. 16.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 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학교의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 교육 기관의 교원의 임용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기 없이 임명된 대학 교육 기관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가산한다.
- 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 된 대학 교육 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⑥ (일반직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 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1982. 4. 8.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이 정관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8. 12.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이 개정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0. 19. 문교부장관 변경 일자)

이 정관은 198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 16.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이 정관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1. 16. 문교부장관 변경 일자)

이 정관은 198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6. 28. 문교부장관 변경 일자)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8. 2. 26.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8 학년도 개시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8. 29.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4. 3.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1. 3. 19.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③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인사위원회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해 임명된 전문대학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2. 7. 24.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4. 7.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2. 18.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3. 5.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5. 12. 22.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2(제 90 조 관련)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직급에 임용된 자의 정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96. 2. 28.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9. 21.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7. 1. 11.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0. 31.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용된 교원은 개정 전 정관 제 37 조에 의하여 임면된 것으로 보며 단, 1997년 9월 1일 이후 임면되는 교원은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임면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3. 1.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8. 5. 1.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동명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동명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10. 21.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9. 3. 17.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 20.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0. 2. 25.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 7.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 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2000. 9. 27.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27.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28.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1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2. 2. 23.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6. 4.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2002.1.1. 현재 재직 중인 교원에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 지침을 적용하되, 근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교수 정년보장
  2. 부교수 6년
  3. 조교수 3년
  4. 전임강사 2년

부 칙

(2003. 3. 1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3. 4.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3. 9. 17.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 및 제91조의 개정 규정은 2003년 5월 27일 공포된 벌률 제6878호 산업교육진흥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4. 2. 2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대학 교육 기관의 교원 임용과 관련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 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한 것으로 본다.
  - ③ (대학 교육 기관의 교원 임용 기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 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조교수의 임용 기간은 제 37조 2항의 1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4. 5. 20.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30.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4. 2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23.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 폐지되는 동명정보대학교는 2012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폐지전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법령과 학칙들을 적용하고,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은 동명대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 폐지되는 동명대학은 2008년 2월 28일(단, 2년제 과정은 200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폐지 전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법령과 학칙들을 적용하고,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은 동명대학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③ (학생에 대한 조치)

- 동명정보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 또는 동명대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동명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 또는 동명대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동명정보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동명정보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은 2006년 3월 1일자로 동명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 (기타) 폐교되는 동명대학 및 동명정보대학교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명대학교 총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사한다.

부 칙

(2006. 4. 24.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14.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7. 10. 19.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18.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1. 26.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2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 11. 1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0. 02. 26.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보고)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0. 12. 09.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3. 0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인가)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1. 04. 1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0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20.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인가)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0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 직원 정원

총 계 (16 명)

일반직	계 10 명	기능직	계 6 명
2급(참 여)	1 명	9등급	3 명
3급(부참여)	1 명	10등급	3 명
4급(참 사)	1 명		
5급(부참사)	3 명		
6급(주 사)	2 명		
7급(부주사)	1 명		
8급(서 기)	1 명		

(별표 2)

학교 일반 직원 정원

가.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

총 계 (34 명)

일반직	계 11 명
5급(부참사)	1 명
6급(주 사)	2 명
7급(부주사)	3 명
8급(서 기)	2 명
9급(부서기)	3 명

기능직 계 23 명

6등급	계 2 명	9 등급	계 8 명
건축원	1 명	전기원	1 명
운전원	1 명	사무보조원	1 명
7등급	계 2 명	건축원	1 명
전기원	1 명	방호원	3 명
건축원	1 명	운전원	1 명
8등급	계 2 명	청소원	1 명
전기원	1 명	10 등급	계 9 명
사무보조원	1 명	건축원	1 명
		사무보조원	2 명
		방호원	5 명
		청소원	1 명

#### 나. 동명대학교

총 계 (140 명)

일반직 계 109 명

- 2급(참여)
- 3급(부참여)
- 4급(참사)
- 5급(부참사)
- 6급(주사)
- 7급(부주사)
- 8급(서기)
- 9급(부서기)

기술직 계 27 명

- 4급(참사)
- 5급(부참사)
- 6급(주사)
- 7급(부주사)
- 8급(서기)
- 9급(부서기)

기능직 계 4 명

- 7등급
- 8등급
- 9등급
- 10등급

